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9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 송갑석·문진석·박광온

서삼석 · 양정숙 · 이개호

이용빈 · 이장섭 · 이형석

인재근 · 전용기 · 조오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. 또한,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,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를 보호하며, 보정각하결정,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

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 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"책임질 수 없는 사유"에서 "정당한 사유"로 완화함(안 제18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).
- 나.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,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서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(안 제48조제4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).
- 다.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(안 제50조제2항, 제4항 및 제5항 신설).
- 라.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6조의2 및 제195조의2 신설 등).
- 마.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 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(안 제110조).
- 바.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 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되도록 함(안 제111조제2항 신설).

사. 보정각하결정,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(안 제119조 및 제120조).

법률 제 호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본문 중 "책임질 수 없는 사유"를 "정당한 사유"로 한다. 제48조제4항제2호 중 "재심사를 청구할 때"를 "재심사 청구기간"으로한다.

제50조제2항 단서 중 "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"을 "제36조제2항제1호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,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.

제63조제1항 중 "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

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- 2.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 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 우

제64조제1항 본문 중 "30일"을 "3개월"로 한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6조의2(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)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,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(이하 "직권 재심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, 제37조제4항,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
 - 3.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 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

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
제84조제1항 본문 중 "책임질 수 없는 사유"를 "정당한 사유"로 한다. 제110조의 제목 "(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)"을 "(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디자인권자"를 "디자인권자(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의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)"로, "질권설정"을 "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"로 한다.

제111조의 제목 "(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)"을 "(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일(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까지 그 디자인 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 에 소멸된다.

제119조 중 "30일"을 "3개월"로 한다.

제120조 중 "30일"을 "3개월"로 한다.

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5조의2(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) 국제디자인등

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재심사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4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 다.
- 제5조(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 제1항, 제66조의2,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 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- 제6조(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청구부터 적용한다.
- 제7조(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) 제111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인의 청산절차가

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제8조(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19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 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 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절차의 무효) ① (생 략)	제18조(절차의 무효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	②
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	
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	
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	
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<u>책임</u>	<u>정당한 사</u>
<u>질 수 없는 사유</u> 에 의한 것으	<u> </u>
로 인정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	
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	
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	
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. 다	<u>.</u>
만,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	
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)	제48조(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4
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	
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64조에 따른 <u>재심사를 청</u>	2 <u>재심사 청구</u>
구할 때	<u>기간</u>

- 3. (생략)
- ⑤ (생략)

제50조(출원의 분할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 인등록출원(이하 "분할출원"이 라 한다)이 있는 경우 그 분할 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 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 다. 다만, 제36조제2항제1호 또 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 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- ③ (생 략)

<신 설>

3. (현행과 같음)	
⑤ (현행과 같음)	
제50조(출원의 분할) ①	(현행과
같음)	
②	

--. ----<u>제36조제2항제1호를</u>-

--.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 록출원이 제51조에 따른 우선 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우선 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, 분 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 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 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 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제63조(거절이유통지) ① 심사관 은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 절이유(제6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 며, 이하 "거절이유"라 한다)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64조(재심사의 청구) ① 디자인 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 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

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
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
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
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
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
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.
 제63조(거절이유통지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
1.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
절결정을 하려는 경우
2.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
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
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
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
정을 하려는 경우
② (현행과 같음)
제64조(재심사의 청구) ①

정(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은 제외한다)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u>30일(</u>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④ (생 략) <신 설>

<u>3개월</u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6조의2(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의 직권 재심사)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,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(이하 "직권 재심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, 제 37조제4항, 제40조부터 제42 <신 설>

<신 설>

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.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.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 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 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 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 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 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 다.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) ① -----

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 다. 다만, 추가납부기간의 만료 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⑥ (생 략)

제110조(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 제110조(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)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 으로 하는 질권설정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 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11조(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제111조(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 디자인권 소멸) 디자인권의 상 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.

<신 설>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 실시권) 디자인권자(공유인 디 자인권의 분할청구의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 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)------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----

의 디자인권 소멸) ① 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

제119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 판)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 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 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 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| 심판)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 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 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<신 설>

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 결등기일(청산종결등기가 되었 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 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 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 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까지 그 디자인권 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. |제119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 -----<u>3개월</u>-----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-----3개월-----제195조의2(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) 국제

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 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